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10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이병도, 유 용, 이광호, 김상훈,
김용연, 권수정, 김제리, 김소영,
이호대, 김소양, 이영실, 오현정,
김동식, 김혜련, 봉양순, 서윤기,
이정인 의원 (17명)

1. 제안이유

- 노인과 장년층은 기준 연령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상이하므로 이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자문·심의 사항 중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자문·심의 사항에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0조제2항제5호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p> <p>②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 의한다.</p> <p>1. ~ 4. (생 략)</p> <p>5.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 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9 조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p> <p>6. (생 략)</p>	<p>제30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5. (현행 제6호와 같음)</p>